

|      |                |
|------|----------------|
| 문서번호 | 생활보장과-61<br>37 |
| 결재일자 | 2016.2.18.     |
| 공개여부 | 부분공개(6)        |
| 보도여부 |                |

|     |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|
|-----|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|
| 주무관 | 장애인복지팀장 | 생활보장과장 | 주민생활국장       |
| 길재호 | 유숙희     | 이승하    | 02/18<br>강대형 |
| 협 조 |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|
|     |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|
|     |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|

**수유동 281-6호 노유자시설  
편의시설 완화신청서 검토보고**

2016.2.18.

**주민생활국  
(생활보장과)**

# 수유동 281-6호 노유자시설 편의시설 완화신청서 검토보고

수유동 281-6호 노유자시설(어린이집) 용도변경(리모델링) 신고와 관련, 편의시설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가 어려운 계단 및 경사로 등에 대하여 완화된 세부기준 승인신청서가 접수되어 전문가의 자문을 참조하여 편의시설 설치를 완화처리하고자 함

## I 관련법규

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 제15조(적용의 완화)

제15조(적용의 완화) ① 시설주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8조제2항의 세부기준에 적합한 편의시설의 설치가 곤란하거나 불합리한 경우에는 세부기준을 완화한 별도의 기준을 정하고 시설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어 이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.

1. 세부기준에 적합한 편의시설의 설치가 구조적으로 곤란한 경우
2. 세부기준에 적합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 안전관리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
3. 대상시설의 용도 및 주변여건에 비추어 세부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## II 완화신청개요

- 주 소 : 강북구 수유동 281-6
- 건축주 : 김윤희
- 용도/종별 : 노유자시설(어린이집) / 용도변경(리모델링)
- 신청사유 :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경사로, 계단, 화장실의 설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기가 어려움

신청내용




| 편 의 시 설 | 기 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완화신청 내역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경사로     | 기울기 1/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구조상 어려움으로<br>기울기를 1/5.5로 설계   |
| 계단      | 단 18cm 이하<br>디딤판 28cm이상<br>유효폭 1.2m 이상 | 기존 건물로 계단을 규격에 맞게<br>설치할 수 없음 |
| 화장실     | 노유자시설 장애인화장실 설치                        | 설치 공간 확보가 어려움                 |

### Ⅲ 검토사항

노유자시설(어린이집) 편의시설 설치기준

| 대상시설   |        | 매개시설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내부시설    |    |           | 위생시설 |     |     |    | 기타 시설     |           |
|--------|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|-----------|------|-----|-----|----|-----------|-----------|
|        |        | 주출입구 접근로 |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| 주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 | 출입구 (문) | 복도 | 계단 또는 승강기 | 대변기  | 소변기 | 세면대 | 욕실 | 샤워실 · 탈의실 | 객실 · 침실 등 |
| 노유자 시설 | 아동관련시설 | 의무       | 의무          | 의무            | 의무      | 의무 | 의무        | 의무   | 의무  | 의무  | 권장 |           |           |

현장 검토

| 연번 | 편의시설 | 현장사진  | 현장 확인 결과  | 검토결과           |
|----|------|---|---|----------------|
| 1  | 경사로  |    | 경사로 기울기 1/8이하로 법정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, 너비 90cm 확보 해야 함   | 법적기준에 따라 설치해야함 |
| 2  | 계단   |   | 구조적으로 규정에 맞는 계단의 설치가 어렵다고 판단되므로, 계단 코에는 논슬립처리를 통한 미끄럼 방지를 하고, 영유아의 안전을 위하여 손잡이를 2중으로 설치해야 함.<br>(상단은 0.85m 내외, 하단은 0.65m 내외 설치) | 완화 필요          |
| 3  | 화장실  |  | 노유자시설로 장애인편의시설 규정에 맞게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하나, 화장실 면적, 어린이집 화장실 설치 기준, 주 이용자가 어린이임을 고려하여 어린이용 대변기 및 소변기의 교체가 가능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완화 필요          |

완화적용을 위한 전문가 자문 실시

- 자문결과 : 경사로를 제외한 계단 및 화장실 설치 완화 가능

| 자문기관                   | 검토의견   | 자문결과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|
| 한국장애인<br>개발원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경사로: 기울기 1/8로 공사, 확보가 어려울 경우 휠체어 리프트 설치</li> <li>○ 계 단: 구조상 편의시설 기준으로 공사할 수 없음</li> <li>○ 화장실: 주 이용자가 어린임을 고려 어린이용 대변기 및 소변기 교체</li> </ul>    | 완화 2<br>보완 1 |
| 서울시<br>장애인편의<br>시설지원센터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경사로: 기울기 1/8로 공사, 확보가 어려울 경우 휠체어 리프트 설치</li> <li>○ 계 단: 구조상 편의시설 기준으로 공사할 수 없음</li> <li>○ 화장실: 편의시설 설치가 구조적으로 곤란하지만 장애인화장실은 설치해야 함</li> </ul> | 완화 2<br>보완 1 |
| 성북구<br>장애인편의<br>시설지원센터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경사로: 법적기준인 기울기 1/8로 공사</li> <li>○ 계 단: 구조상 편의시설 기준으로 공사할 수 없음</li> <li>○ 화장실: 편의시설 설치가 구조적으로 곤란하지만 장애인화장실은 설치해야 함</li> </ul>                  | 완화 2<br>보완 1 |

## IV 검토결과

### 완화신청 일부 승인 결정

#### ○ 완화 승인

- 계 단: 구조적으로 규정에 맞는 계단의 설치가 어렵다고 판단되므로, 계단코에는 논슬립처리를 통한 미끄럼방지를 하고, 영유아의 안전을 위하여 손잡이를 2중으로 설치(상단은 0.85m 내외, 하단은 0.65m 내외 설치)
- 화장실: 노유자시설로 장애인편의시설 규정에 맞게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하나, 화장실 면적, 어린이집 화장실 설치 기준, 주 이용자가 어린임을 고려하여 어린이용 대변기 및 소변기의 교체가 가능하고 편의시설은 완화 조치

#### ○ 보완 적용

- 경사로: 추후 제출한 수정도면을 적용하여 경사로 기울기를 1/8로 공사

붙임 1. 수정도면 1부.

2.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완화신청에 따른 전문가 자문 회신 3부. 끝.

